

#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96
----------	-----

2019년 9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7월 31일 김정환 의원의 18명
2.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8월 30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김정환 의원)

###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서는 시장이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입장료를 받고 운영하는 시설인 '서울상상나라'에 대해서는 운영조례인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와 관련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서울 상상나라 입장료 감면의 내용을 신설함. (안 제6조제1항5의2호의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조례안의 개요

- 동 조례안은 의사상자의 희생과 피해를 입은 사람의 행위에 대한 예우와 선양을 도모하기 위해 시립 어린이복합시설인 “서울 상상나라”를 이용하는 의사상자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의로운 이들을 보호하고 함께 하는 정의로운 서울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2 주요사항 검토

##### □ 입장료 감면 사항

- 「지방자치법」<sup>1)</sup>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

1)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처럼 시민의 권리 및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상상나라의 입장료 4천원(개인)을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미 상위법에서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지원을 하는 제도를 서울시 차원에서 확대하려는 것으로 집행부도 동의한 사항임.

### <상위법에 따른 고궁 및 공원 등 시설 이용 지원 근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 4. 1.>

- 한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음.

<상위법에 따른 고궁 및 공원 등 시설 이용 지원>

감면시설	이용료나 입장료 감면을
고궁 및 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대관공연 제외),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 제외),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100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50/100

<조례에 따른 공원 등 이용지원>

감면시설	이용료나 입장료 감면을	비고
공원 입장료	100/100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sup>2)</sup>
한강공원 체육시설	50/100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sup>3)</sup>
공영주차요금	80/100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sup>4)</sup>
화장시설 사용료	100/100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sup>5)</sup>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1. 7., 2019. 3. 28., 2019. 7. 18.>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가유공자 지원과의 형평

- 현행 조례에서는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그 외 감면대상을 명시하고 있는데,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국가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한 자 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여 국민의 애국심을 기리거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up>6)</sup>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3)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이용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5. 3., 2019. 5. 2.>

2. 국가유공자·의사상자·장애인·65세 이상 노인·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토요일교외 체험학습 참여자·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

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5., 2011. 9. 29., 2013. 5. 16., 2013. 10. 4., 2016. 5. 19., 2016. 7. 14., 2019. 1. 3., 2019. 5. 2.>

1.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사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5)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② 시장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며, 서울특별시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구분하여 사용료·관리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4., 2017. 1. 5., 2019. 5. 16.>

6)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균경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희생한 것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것과 비교하여 과소평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과의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현행 상상나라 입장료 감면 대상 및 내용>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입장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 <개정 2015. 5. 14., 2019. 5. 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반한 성인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다둥이 행복카드를 지닌 자 중 세자녀 이상을 둔 가족
  7. 어르신(만 65세 이상)
  8. 서울상상나라 회원(연회비 납부자에 한함)
- ②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

를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로 서울상상나라 입장료를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장료를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

[조례 제7107호(2019. 5. 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3 종합 검토의견

- 국가유공자 등에게 적용되는 시립시설의 감면사항을 고려하여 의사상자 등에게도 이에 준하는 감면혜택을 준다면 의사상자 등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인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자기희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헌신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을 감안할 때,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감면규정 신설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11명,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796
----------	-----

발의년월일 : 2019년 7월 31일

발 의 자 : 김정환, 박기열, 채인묵, 김희걸,  
한기영, 오중석, 노식래, 오현정,  
박기재, 이호대, 강동길, 최정순,  
송정빈, 김제리, 김광수, 유 용,  
문병훈, 김기덕, 이광성 의원 (19명)

## 1. 제안 이유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시장이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입장료를 받고 운영하는 시설인 ‘서울상상나라’에 대해서는 운영조례인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와 관련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 골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서울 상상나라 입장료 감면의 내용을 신설함.  
(안 제6조제1항5의2호의 신설)

###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입장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p> <p>1. ~ 5. (생략)</p> <p><u>&lt;신 설&gt;</u></p>  <p>6. ~ 8. (생략)</p> <p>② (생략)</p>	<p>제6조(입장료의 감면) ①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5의2. 「<u>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u>사람</u></p> <p>6. ~ 8.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입장료의 감면)제1항에 제5호의2를 신설함에 따라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배우자 일 경우 자녀 포함), 의상자 및 활동보조자(부상등급 1-2등급의 경우) 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의 입장료 감면비용 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총 비용 ≒ 67,200천원(연 평균 13,44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이용료의 감면비용 지원 (제6조제1항제5호의2)	13,440	13,440	13,440	13,440	13,440	67,200
	소계(b)	13,440	13,440	13,440	13,440	13,440	67,200
□총 비용(b-a)		13,440	13,440	13,440	13,440	13,440	67,200

다. 비용추계 전제

- 2019년 1월 기준 서울시 거주 의사상자는 146명(의사자 85, 의상자 61)이므로 향후 인원 증감은 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

- 의사자 유족은 선순위자가 모두 배우자이고, 그 자녀들은 2명으로 가정
- 의상자는 부상등급이 모두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고, 배우자 및 자녀가 아닌 활동 보조자 1명과 동행하는 것으로 가정
-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는 3명으로 가정
- 위와 같이 가정할 경우 의사자 유족은 255명, 의상자와 활동보조자는 122명, 의상자가족은 183명으로 감면가능 대상은 총 560명이고 영아 및 어르신 등 무료입장대상은 없는 것으로 가정
- 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배우자 및 자녀 등 대상자 모두 서울상상나라 이용하고 횟수는 연6회로 가정
- 서울상상나라 입장료는 만3세이상~65세미만(영아 및 어르신은 무료) 4,000원이며 향후 금액은 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

#### 라. 비용추계 산식

- 서울상상나라 의사상자 등 입장료 면제액 ≙ 67,200천원
- 서울상상나라 의사상자 등 입장료 면제액
  - =  $\sum_{i=1}^5$ (연간 서울상상나라 의사상자등 입장료 면제액)<sub>i</sub>
  - ※ i = 비용추계 연차(2020년~2024년)
- 연간 서울상상나라 의사상자 등 입장료 면제액
  - = 의사상자 등 감면대상자 × 이용횟수 × 입장료
  - = 560명 × 6회 × 4,000원
  - = 13,440천원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